

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담당부서 : 법인사무국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6에 근거하여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의 각종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의거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법인사무국장, 재무담당
2.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, 외부전문가,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
3. 대학의 교원 및 재학생 각 2인(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)

④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재무담당자로 한다.

제4조 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(법인이사)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제반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개정 2020.12.16.)

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신설 2020.12.16.)

③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 (신설 2020.12.16.)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서면결의) 부득히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의록) ① 간사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토의내용,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